

저작권법 개정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안) 설명 자료

1. 창작자 공정보상 조항 도입 (일명 ‘백희나, 조용필 보호법’)

■ 취지

저작권법은 창작자 보호를 위해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함. 저작권을 통해 창작자는 저작물의 시장 유통을 통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대가를 얻을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인 모델은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을 유통할 자본이나 사업수단, 유통망 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통업자(출판사, 음반사, 방송사 등)와의 계약을 통해 작품을 유통할 수밖에 없음. 그런데 창작자는 유통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리한 내용의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계약을 전적으로 사적자치에만 맡기고 저작권 계약의 불평등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음. 다시 말해 현행 저작권법은 창작자가 저작권 계약의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만 충실할 뿐, 계약자유가 관철되지 못하는 현실은 무시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안은 저작권 계약의 사적자치 원칙에 일부 제한을 두어 저작권 제도의 기본 취지인 창작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된 내용

저작권 계약자유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① 창작자가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거나, ② 창작자가 불리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위 문제 ①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양도할 때 양도되는 권리를 종류별로 특정하여 계약하도록 하고(안 제45조 제2항), 아직 창작되지 않은 작품 또는 아직 알 수 없는 이용형태에 대한 사전 양도나 이용허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안 제46조의2).

위 문제 ②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저작권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경우 창작자가 유통업자 등에게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보장함(안 제46조의3). 한편 창작자의 공정한 보상 청구권의 남발로 인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여 공정 보상 청구권에 일정한 제한을 둬(안 제46조의3 제5, 6항 등).

■ 사례 및 개정안의 효과

백희나 <구름빵> : 어린이 그림책 작가로 유명한 ‘백희나’는 불리한 지위에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 대표적 사례임. <구름빵>은 2004년에 출간되어 국내에서만 50만부 이상이 팔렸고, 일본, 프랑스, 독일 등 8개국으로 수출되었으며 국내에서 뮤지컬로 제작되어 전국 20여개 도시에서 공연되었고 KBS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방영되는 등 2014년까지 약 4,4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함. 그러나 ‘백희나’ 작가는 출판사(한솔)와 매절계약(저작권양도계약)을 하여 850만원을 대가로 받은 것이 전부임. 개정안의 공정보상 청구권이 도입된다면 앞으로 <구름빵>과 같은 피해 사례는 생길 수 없음.

조용필 : 가왕으로 불리는 ‘조용필’은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쫓불>, <고추잠자리> 등 31곡에 대해 1986년 지구레코드 대표에게 복제권과 배포

권을 양도하였음. 이로 인해 ‘조용필’은 자신의 곡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때 지구레코드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저작권료도 지구레코드가 받아 갔음. 소송에서 ‘조용필’ 측은 당시 내용을 잘 모르고 체결된 계약이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989 판결).

독립제작사 : 독립제작사들은 방송사에게 저작권을 모두 넘겨주고 재방송 등 2차적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한 푼도 받지 못함. 2013년 조사에 따르면 독립제작사협회 설문 응답자의 81.3%가 방송사의 저작권 포기 강요를 대표적인 방송외주제작 불공정 실태라고 답함.¹⁾ 그리고 외주제작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나치게 낮은 제작비를 꼽았고(95.8%), 이로 인한 프로그램 제작 의욕 상실을 피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77.1%). 요컨대 저작권 제도가 계약자유의 원칙만 강조하다보니 창작자인 외주제작사의 창작 의욕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개정안과 같이 공정한 보상 청구권이 도입된다면 낮은 제작비와 재방료 수익을 전혀 공유하지 못하는 방송외주 제작 현실도 개선될 수 있음.

■ 입법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저작권 계약의 사적자치 원칙을 수정하는 조항을 저작권법에 두고 있음. 프랑스와 독일은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 또는 저작권 계약을 수정할 권리를 보장하며,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스페인, 폴란드는 미래 창작물에 대한 포괄적인 이용허락 계약을 무효로 함. 최근 핀란드(2014년말)와 네덜란드(2015년초)도 공정 보상 청구권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한 바 있음. 실제로 독일에서는 영화(캐리비안의 해적, Das Boot), 방송물(Tatort) 분야에서 공정한 보상 청구 소송 사례가 있었음.

1)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091711> 참조.